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3. 15 선고 2023나15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3. 15 선고 2023나151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가합516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전라남도 영광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변론 종결 2024. 2. 28.

판결 선고 2024. 3. 1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가합51655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3,554,203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701,9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6,256,163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제1심 공동피고 C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7행의 "피고 전라남도 영광군(이하 '피고 영광군'이라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중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로, "피고 영광군"을 "피고"로1),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0행과 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0행의 "16호증의"를 "16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A가 피고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지원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인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될만한 상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이에 살피건대,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A가 자신이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지원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가 A의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A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12면 6행의 "③ 그러나"부터 10행의 "않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2호)」제22조 제3항 단서 제2호는 '투자기업의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투자기업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행위를 승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기 확보된 담보의 실행만으로는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 제1심판결 12면 13, 14행의 "알았던 점"을 "않았고, 피고는 전라남도로부터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환금성 높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겠다.'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받은 다음 이러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이 아닌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이도식

판사최은경

- 1) "피고 영광군은"은 "피고는"으로, "피고 영광군이"는 "피고가"로 각 고쳐서 본다.
- 2) 피고가 제출한 2023. 11. 13. 자 준비서면 제6면 내지 7면까지에 기재된 피고의 법리전개 및 관련 주장을 이와 같이 선행한다.